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경택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379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2월 03일

발 의 자: 송경택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곽향기, 김규남,
김영철,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박 석, 박영한, 신동원,
신복자, 유만희, 윤기섭,
윤종복, 이상욱, 이성배,
이종태, 이희원, 최민규,
홍국표, 황철규 의원(26
명)

1. 제안이유

- 명예시장으로 위촉할 수 있는 인사의 사회적 범주를 확대하여, 현행 조문에 규정된 어르신, 장애인, 전통상인, 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청년, 여성, 체육인도 포함함으로써 명예시장의 사회적 대표성을 높이고자 함.
- 현행 조례에 규정된 명예시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명예시장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명예시장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및 정책제안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가. 명예시장으로 위촉할 수 있는 인사의 사회적 범주에 청년, 여성, 체육인을 포함함(안 제5조제1항).

나. 명예시장이 참여하는 회의의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제4항).

다. 명예시장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및 정책제안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제5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장애인, 전통상인, 문화예술인”을 “청년, 여성, 장애인, 전통상인, 문화예술인, 체육인”으로 한다.

제8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의 일시·장소, 참석자, 발언 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및 정책 제안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명예시장의 위촉) ① 시장은 <u>어르신, 장애인, 전통상인, 문화예술인</u> 등 각 분야별로 명예시장을 위촉하며, 정원이 20명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야를 확대 또는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5조(명예시장의 위촉) ① ----- ----- <u>청년, 여성, 장애인, 전통상인, 문화예술인, 체육인</u> -----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회의) ① ~ ③ (생략)	제8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의 일시·장소, 참석자, 발언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u><신 설></u>	⑤ 시장은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및 정책 제안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같은 조례 제5조(명예시장의 위촉)의 명예시장 분야를 구체적¹⁾으로 명시(청년, 여성, 체육인을 추가)하고, 추가로 명예시장 회의를 개최한 경우 그 회의록을 시 누리집에 공개²⁾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 병 준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또한 명예시장 정원(20명)은 유지한 상태에서 구성인원에 대한 내용만 변경한 것이므로 별도 비용수반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누리집에 업로드 형태로 공개하므로 이에 따른 비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